

##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, 조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장

### 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| 대상지역  |     |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  |     |                | 375,525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 | 용산구 | 용산동2가 1-597 일대 | 53,734  | 신속통합기획<br>주택재개발<br>후보지 |
|       | 용산구 | 이태원동 214-37 일대 | 66,986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마포구 | 합정동 444-12 일대  | 40,753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은평구 | 녹번동 35-78 일대   | 20,32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종로구 | 행촌동 210-2 일대   | 76,31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금천구 | 시흥동 1-1 일대     | 24,901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구로구 | 구로동 739-8 일대   | 92,521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지정기간 :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

## 2. 허가구역 조정(구역변경) 대상지역

### 1) 구역변경 1개소

#### ○ 신속통합기획(주택재개발) 선정지(1개소)

| 대상지역             | 면적(㎡)    |          |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   | 변경후      | 증감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마포구 공덕동 11-24 일대 | 82,320.2 | 84,389.0 | 증 2,068.8 | 신속통합기획<br>주택재개발 |

#### ○ 지정기간 :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

※ 단, 편입필지 효력발생일('25. 11. 11.) / 제척필지 효력발생일('25. 11. 6.)

## 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| 용 도 지 역 |                | 면 적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도시지역    | 주거지역           | 6㎡ 초과  |
|         | 상업지역           | 15㎡ 초과 |
|         | 공업지역           | 15㎡ 초과 |
|         | 녹지지역           | 20㎡ 초과 |
|         |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| 6㎡ 초과  |

## 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\*

\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## 6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지정 7개소)

- 붙임 2 (조정 1개소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## 5. 종로구 행촌동 210-2 일대

